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4 -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94355 사해행위취소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1. D

2. E

3. F

4. G

5. H

6. I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곤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0. 28. 선고 2019가단65095 판결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과 J 사이에 전북 부안군 K 임야 2,579㎡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2018. 4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J에게 전북 부안군 K 임야 2,579㎡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8. 5. 3. 접수 제9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¹⁾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(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원고 패소 부분)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진

판사 이국현

1)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, C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, C가 항소하였으나 당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·확정되었다.

판사 김광진